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
----------	----

제출연월일 2008. 5. .

제 출 자 양 주 시 장

□ 제안이유

“양주시자치법규 일제정비 위원회”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조사에 의거 발췌된 일부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인용법명 변경 : 수질환경보전법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나. 의료폐기물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7호)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폐기물을 규정함

다. 민간명예감시관 명칭 변경(안 제26조)

조례에서는 “민간환경감시관”으로 되어있고 규칙에서는 “명예환경감시관”으로 되어있어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 용어를 “명예환경감시관”으로 통일하고자 함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및수생태계보존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7.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8조중 “법 제8조”를 “법 제9조”로 하고, “필요시 매 2년마다”를 “필요시에”로 한다.

제9조중 “법 제26조”를 “법 제25조”로 한다.

제10조중 “법 제26조”를 “법 제25조”로 한다.

제14조중 “시행규칙 제8조”를 “시행규칙 제14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법 제13조”를 “법 제14조”로 하고, “영 제6조의2의”를 “영 제8조의”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법 제63조”를 “법 제68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법 제13조” 를 “법 제14조” 로 한다.

제4장 제목중 “민간환경감시원” 을 “명예환경감시원” 으로 한다.

제26조 조제목 및 제1항과 제2항중 “민간환경감시원” 을 각각 “명예환경감시원” 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생산자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중 라목 전자제품 분리배출 요령란의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및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을 각각 삭제하며,
2번째 중요표시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회수 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 다만.” 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양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가목중 “제9조의2” 를 “제16조” 로 한다.

제3조중 “제13조” 를 “제14조” 로 한다.

제6조 본문중 “법 제12조” 를 “법 제13조” 로 하고, “제6조” 를 “제7조” 로 한다.

제6조제1호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 을 규칙 제10조 “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법 제63조” 를 “법 제68조” 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법 제12조” 를 “법 제13조” 로 하고, 제3항중 “법 제63조” 를 “법 제68조” 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법 제13조” 를 “법 제14조” 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를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8조의” 로 하고, 단서조항중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3제4호” 를 “영 제8조제6호 및 규칙 제10조제4호” 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지방세법” 을 “「지방세법」” 으로 한다.

[별표 2]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제2호와 제3호중 “(법 제12조 관련)” 을 각각 “(법 제13조관련)” 으로 한다.

소관실·과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입 안 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기획감사담당관 백 윤기
	담당·팀장 직위·성명	의회법무담당 김 정식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김 정식(820-2061)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제2조(정의) 3. ----- 「수질환경보전법」 ----- 4. ----- 「수질환경보전법」 -----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폐기물로서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신설>	제2조(정의) 3.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 4.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7.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8조 ----- 법제8조 ----- ----- 필요시 매 2년마다 ----- -----	제8조 ----- 법제9조 ----- ----- 필요시에 ----- -----
제9조 ① --- 법 제26조 -----	제9조 ① --- 법 제25조 -----
제10조 ① --- 법 제26조 -----	제10조 ① --- 법 제25조 -----
제14조 ① --- 시행규칙 제8조 -----	제14조 ① --- 시행규칙 제14조 -----
제15조 ① --- 법 제13조 ----- ----- 영 제6조의2의 ----- ----- ②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제15조 ① --- 법 제14조 ----- ----- 영 제8조의 ----- ----- ②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제17조 ② ----- ----- 법 제63조 -----	제17조 ② ----- ----- 법 제68조 -----
제18조 ① ----- 법 제13조 -----	제18조 ① ----- 법 제14조 -----
제4장 민간환경감시원 -----	제4장 명예환경감시원 -----
제26조(민간환경감시원 임명) ① ----- ----- 민간환경감시원 ----- ② 민간환경감시원 -----	제26조(명예환경감시원 임명) ① ----- ----- 명예환경감시원 ----- ② 명예환경감시원 -----

현행			개정안														
<p>[별표3]</p> <p>2. 생산자 재활용의무대상 제품</p>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류</th> <th>세부품목</th> <th>분리배출요령</th> </tr> </thead> <tbody> <tr> <td>라. 전자제품</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이동식단말기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 생략 ※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td> </tr> </tbody> </table>			종류	세부품목	분리배출요령	라. 전자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이동식단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 생략 ※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p>[별표3]</p> <p>2. 생산자 재활용의무대상 제품</p>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류</th> <th>세부품목</th> <th>분리배출요령</th> </tr> </thead> <tbody> <tr> <td>라. 전자제품</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이동식단말기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 <현행과 같음> ※ 삭제 </td> </tr> </tbody> </table>			종류	세부품목	분리배출요령	라. 전자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이동식단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 <현행과 같음> ※ 삭제
종류	세부품목	분리배출요령															
라. 전자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이동식단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 생략 ※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종류	세부품목	분리배출요령															
라. 전자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이동식단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 <현행과 같음> ※ 삭제 															
<p>※<생략></p> <p>※ 「<u>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u>」 제1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회수 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 다만, 배출스티커를 붙여 배출하는 경우에는-----</p> <p>※<생략></p> <p>※<생략></p>			<p>※<현행과 같음></p> <p>※<삭제>배출스티커를 붙여 배출하는 경우에는-----</p> <p>※<현행과 같음></p> <p>※<현행과 같음></p>														